제851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상태불량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의무화(신설) ㅇ 정기안전점검 결과 취약등급(D·E)으로 지정된 경우 정밀안전점검을 의무 시행할 것을 규정 ▶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	1.비중요
2	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(신설) ㅇ 자본적정성, 위험관리 등 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한 세부 준수사항 마련 ▶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9조의2 2.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(신설) ㅇ 경영개선권고 받은 자산관리회사에게 경영개선계획을 제출(2개월 이내)할 의무를 부과 ▶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9조의5	1.비중요 2.비중요
3	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지능형주차장치의 안전기준(신설) ㅇ 비상시수동조작장치, 자동차이탈방지장치 등 지능형 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마련 ▶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2.지능형주차장치의 통신 연결 상태 기준 및 확인(신설) ㅇ 지능형주차장치의 주차로봇과 주제어반과의 통신 연결상태가 주차장 내부 전 구간에서 양호하도록 할 것을 의무화하고,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성적서 등 제출서류 목록을 규정 ▶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,제15조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3.지능형주차장치 주차로봇의 주행 능력(신설) ○ 지능형주차장치의 주차로봇에 주행 바닥면의 종단경사도 4%에 대한 주행 능력을 요구 ▶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	
4	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(금융위원회)	1.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조정(신설) ○ 민간중금리 대출* 적격요건 중 금리요건을 기존의 민간중금리 금리상한(신용카드업자는 100분의 11.0,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자는 100분의 14.0)을 기준으로 조달금리 변동 폭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리상한으로 변경하며, 이 경우에도 금리상한 한도는 신용카드업자는 100분의 13.0,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자는 100분의 15.5로 설정 * 본업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 산정시 80%로 축소 반영되는 민간중금리 대출 ▶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6	1.비중요
5	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(금융위원회)	1.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조정(신설) ○ 비조합원 대출한도 우대가 적용되는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 중 금리요건을 기존의 민간중금리 금리상한(100분의 8.5)을 기준으로 조달금리 변동 폭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리상한으로 변경하며, 이 경우에도 금리상한 한도는 100분의 10.5로 설정 ▶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의6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6	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(금융위원회)	1.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조정(신설) ○ 민간중금리 대출* 적격요건 중 금리요건을 기존의 민간중금리 금리상한(100분의 16)을 기준으로 조달금리 변동폭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리상한으로 변경하며, 이 경우에도 금리상한 한도는 100분의 17.5로 설정 *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한도에 100분의 150으로 가산되어 적용되는 민간중금리 대출 ▶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2	1.비중요
7	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(관세청)	1.공동보세구역 특허요건 및 운영인의 의무 (신설) ○ 화물반출입 등을 위한 시설장비 구축 등 공동보세구역의 특허요건 규정 ○ 보세사 재채용 기간 명시 등 운영인의 의무 부여 ▶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,제16조제17조 2.물품원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반입정지 기간(강화) ○ 물품원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반입정지 최소기간을 7일로 규정 ▶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	1.비중요 2.비중요
8	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안 (산업통상자원부)	1.비상용 예비전원의 시설기준 강화(강화) ○ 건축법 등 개별법에서 상용전원 정전 시에 자동으로 비상용 예비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도록 규정한 경우, 자동절환 기능을 갖는 장치를 시설하도록 의무화 ▶전기설비기술기준 제72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9	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자동차로유지기능의 작동 및 해제에 대한 기준 강화 등(강화) ○ 자율주행차의 자동차로유지기능 해제수단 작동방식 강화, 해제절차 세분화 등에 대하여 규정 ▶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3 2.자동차로유지기능의 감지·대응 대상 확대 등(강화) ○ 자동차로유지기능의 감지·대응 대상을 기존 선행자동차에서 도로 차단지점 및 보행자까지 확대 ○ 급감속하는 전방의 자동차 등 충돌을 반드시 방지해야 하는 상황 신설 등 ▶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3 3.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감지범위 기준 강화 등(강화) ○ 감지범위를 기존 최소전방 감지거리에서 전방, 측방 인접차로 및 주행차로의 주행환경, 교통상황도 추가하는 것으로 확대 등 ▶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3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 5.비중요 6.비중요 7.비중요 8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4.자동차로유지기능의 작동상태 등 알림방식 강화(강화) ○ 자동차로유지기능의 작동상태 알림방식을 작동불가, 작동, 해제 등으로 구분 등 ▶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3 5.비상운행 시작 조건 등 명확화(강화) ○ 비상운행 시작 조건을 5㎪을 초과하는 종방향 감속도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명확화(기존에는 주행차로 전방, 측방의 충돌위험을 감지 등으로만 규정)하는 등 비상운행방법 변경 ▶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3 6.고장에 대비한 설계 기준 개선(강화) ○ 고장 발생을 감지하고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을 점검하는 자가진단을 상시 실시하도록 규정 ▶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3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7.운전자의 운전조작 가능여부 판단 기준 등 개선(강화) ㅇ 운전자가 운전자의 운전조작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4가지 활동 중 2가지 이상의 활동을 하는 것(기존에는 1가지 이상)이 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에 감지되어야 운전자가 운전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변경 등 ▶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3 8.운전자의 주의상태 여부에 대한 감지기준 신설(신설) ㅇ 부분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자 주의상태 감지여부에 관한 기준(운전자가 주로 전방의 도로 주시 등) 신설 등 ▶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3	
10	평택·당진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제정안 (해양수산부)	1.평택·당진항 도선구에서의 도선안전절차(신설) ㅇ 도선구와 관련한 구체적 안전절차 규정(안전도선 일반사항, 도선 속력 및 관련 절차 등) 신설 ▶평택·당진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제2조,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	1.비중요